

의안번호	제581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

발의자	이상정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5월 30일

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

(이상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5월 30일

발의자 : 이상정, 김정일, 박봉순,
안지윤, 안치영, 이상식,
조성태

1. 제안이유

-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기반은 미약함.
- 청소년과 청년기의 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.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, 이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은 그 사무 성질상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 할 수 있음.
- 이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·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뜻을 정의함 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(안 제6조)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 (안 제7조)

- 정책의 전문성 제고,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유관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, 제9조)
- 서비스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)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비용추계 : 붙임
- 협의 : 충청북도 복지정책과
- 조례안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”이란 고령,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·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, 인력,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정책과제

2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
3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
4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
5.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간병·가사 서비스 지원
2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·정서적 지원
3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
4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
5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
6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
7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
8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충청북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9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시·군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민간 전문가 활용) 도지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전문가·법인·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)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, 시·군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중복지원의 제한) 도지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(사무의 위임·위탁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시장·군수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
2.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,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□ 청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□ 민법

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 등)
- 조례안 제7조(지원사업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'23.12.31.일 도내 청년인구(293천명) 기준 가족돌봄청년 1천명* 산출
 - *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정치(전체 청년의 0.35%) 적용
 - ※ 「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-보건복지부-」 결과 전체 청년의 0.6% 정도 수준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** 추진 비용
 - ** 일상돌봄 서비스, 심리·정서 지원, 직업훈련·취업 지원, 문화·체육활동 지원, 인식개선 사업 등

나. 추계 결과
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: 30백만원('25년)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(계) 4,294백만원('26~'28년)
 -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: 3,994백만원('24년 794, '25~'28년 800)
 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심리·정서 지원 : 60백만원('26~'28년)
 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직업훈련·취업 지원 : 150백만원('26~'28년)
 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문화·체육활동 지원 : 60백만원('26~'28년)
 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: 30백만원('26~'28년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 및 시군비 매칭 지원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	
세 입	-	-	-	-	-	-	
	-	-	-	-	-	-	
세 출	794,000	830,000	900,000	900,000	900,000	4,324,000	
실태조사	-	30,000 (도 100%)	-	-	-	30,000	
일상돌봄 서비스	794,000 <small>(국 72, 도 15, 시군비)</small>	800,000 <small>(국 72, 도 15, 시군비)</small>	800,000 <small>(국 72, 도 15, 시군비)</small>	800,000 <small>(국 72, 도 15, 시군비)</small>	800,000 <small>(국 72, 도 15, 시군비)</small>	3,994,000	
심리·정서 지원	-	-	20,000 (도 100%)	20,000 (도 100%)	20,000 (도 100%)	60,000	
작업훈련·취업 지원	-	-	50,000 (도 100%)	50,000 (도 100%)	50,000 (도 100%)	150,000	
문화·체육 지원	-	-	20,000 (도 100%)	20,000 (도 100%)	20,000 (도 100%)	60,000	
도민 인식개선	-	-	10,000 (도 100%)	10,000 (도 100%)	10,000 (도 100%)	30,000	
재원 조달							
의 존 재 원	소 계	794,000	830,000	900,000	900,000	900,000	4,324,000
	국 비	574,100	576,000	576,000	576,000	576,000	2,878,100
	도 비	117,450	150,000	220,000	220,000	220,000	927,450
	시군비	102,450	104,000	104,000	104,000	104,000	518,450